통일부고시 제2005-7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 6. 13.

통 일 부 장 관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간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 운행승인(이하 "운행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그 방법 및 승인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2. "부정기운행·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한정된 회수로

남북한간을 운행·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운행·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규칙적으로 남북한간을 운행·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선박운항승인의 신청)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운항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선박운항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항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 관계법령에 의한 해상운송사업 면허·등록증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증 사본 1부
4. 선박보험증서(P&I 증명서) 사본 1부
5. 선원명부 1부
6. 북한의 운항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항합의서 등 운항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정부 및 대한적십자사물자를 운송하는 경우 및 외국의 해상운송회사가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계획서에는 운항목적, 운항일정, 운항항로, 통신체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기운항승인의 신청)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운항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항공기운항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항계획서 1부
2. 항공기 제원내역서 1부
3. 승무원명부 1부
4. 관계법령에 의한 항공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5. 북한의 운항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항합의서 등 운항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계획서에는 운항목적, 운항일정, 비행항로, 통신체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조(철도차량운행승인의 신청)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철도차량운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행계획서 1부
2. 철도차량 제원내역서 1부
3. 승무원명부 1부
4. 북한의 운행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획서에는 운행목적, 운행일정, 운행구간, 통신체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운행승인의 신청)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운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행계획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승무원명부 1부
4. 관계법령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허가·등록증 사본 1부
5. 북한의 운행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획서에는 운행목적, 운행일정, 운행노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7 조(대리승인신청) 대리인이 운행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에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조 및 제6조의 경우는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8 조(변경승인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에 제3조 내지 제6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중 변경사항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승인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추가자료 요구) 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3조 내지 제6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 외에 운행승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운행승인기준) ①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신청서의 제출서류 등이 영 제43조의 운행의 승인기준 및 다음 각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는 북한의 책임있는 기관과 체결되어야 할 것
2. 운행승인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승인의 불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운행승인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월 이내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운행승인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당해 항로 또는 노선에서 6월이내 부정기적으로 5회 이상 남북한간에 당해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선박 및 자동차의 정기운행에 한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외국의 해상운송회사가 선박의 운항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선박수리·선원교대·급유 등의 사유로 남북한의 특정항만을 단순 경유하기 위해 운항하는 경우
2. 기타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 11 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이 운행승인신청에 대해 승인을 할 때에는 선박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항공기는 별지 제8호서식, 철도차량은 별지 제9호서식, 자동차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운행승인서를 발급한다.

제12조(운행승인유효기간) ①운행승인유효기간은 운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범위이내에서 정한다.

1. 정기운행 : 2년
2. 부정기운행 : 1년

②운행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송장비 운행승인의 신청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경우 당해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의 첨

부서류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운행결과의 보고) 선박·항공기·철도차량의 운행승인을 받은 자가 운행한 때에는 부정기운행은 운행후 7일 이내, 정기운행은 운행후 익월 7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운행승인은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 제94-1호)
2.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 제2001-5호)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처리기간	10일

선박운항승인신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선명(선적, 총톤수)					
운항목적					
운항기간					
운항노선					
운항구분	정기	월 회	부정기	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항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운항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 관계법령에 의한 해상운송사업 면허·등록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사본 1부 4. 선박보험증서(P&I 증명서) 사본 1부 5. 선원명부 1부 6. 북한의 운항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항합의서 등 운항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정부 및 대한적십자사물자를 운송하는 경우 및 외국의 해상운송회사가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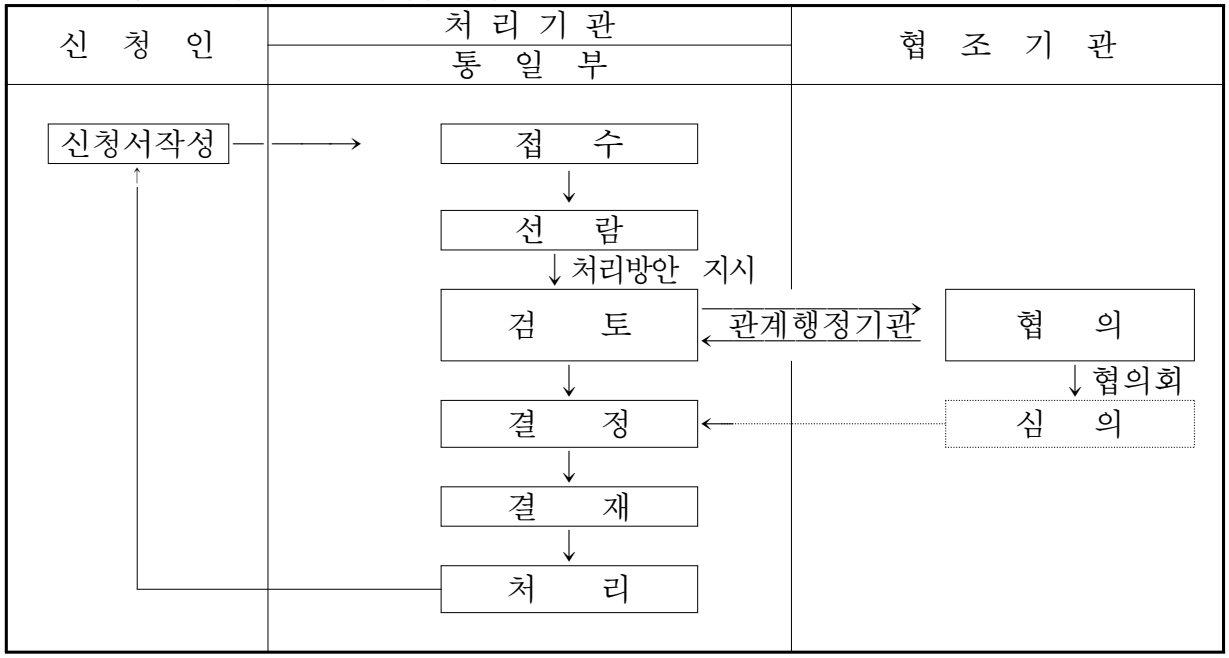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처리기간	10일

항공기운항승인신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운항기종					
운항목적					
운항기간					
운항노선					
운항구분		정기	월 회	부정기	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운항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운항계획서 1부 2. 항공기 제원내역서 1부 3. 승무원명부 1부 4. 관계법령에 의한 항공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5. 북한의 운항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항합의서 등 운항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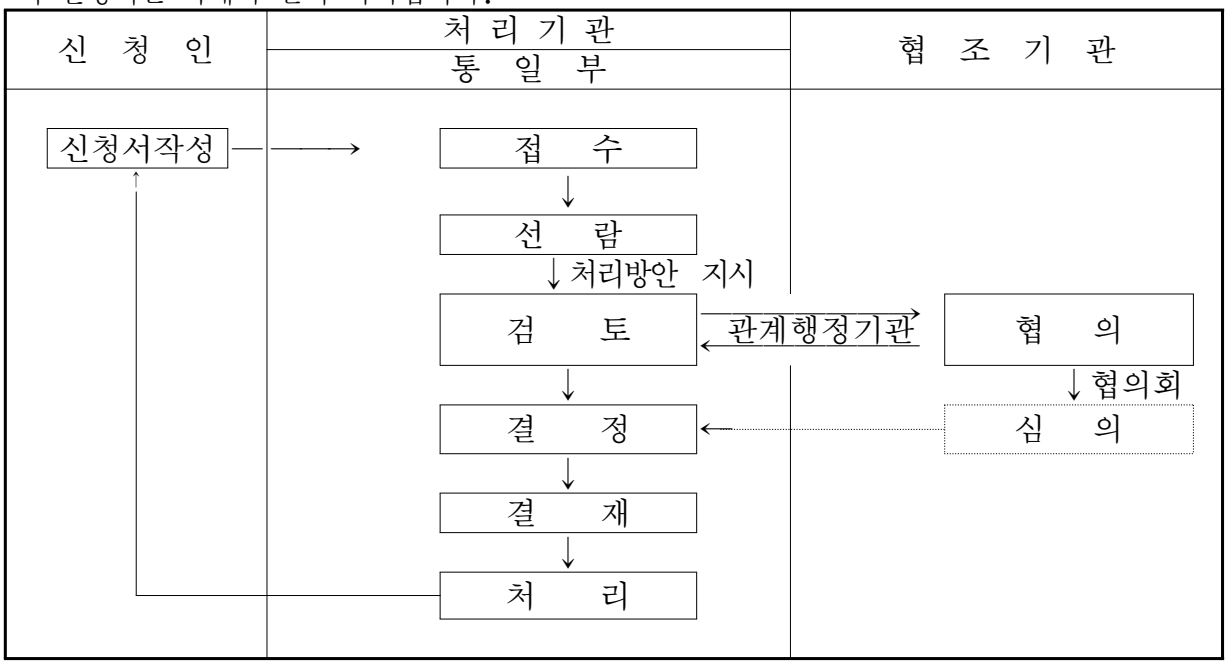

[별지 제3호 서식] (앞 면)

처리기간	5일

철도차량운행승인신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차량명칭					
운행목적					
운행기간					
운행구간					
운행구분	정기	월 회	부정기	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등운행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운행계획서 1부 2. 철도차량 제원내역서 1부 3. 승무원명부 1부 4. 북한의 운행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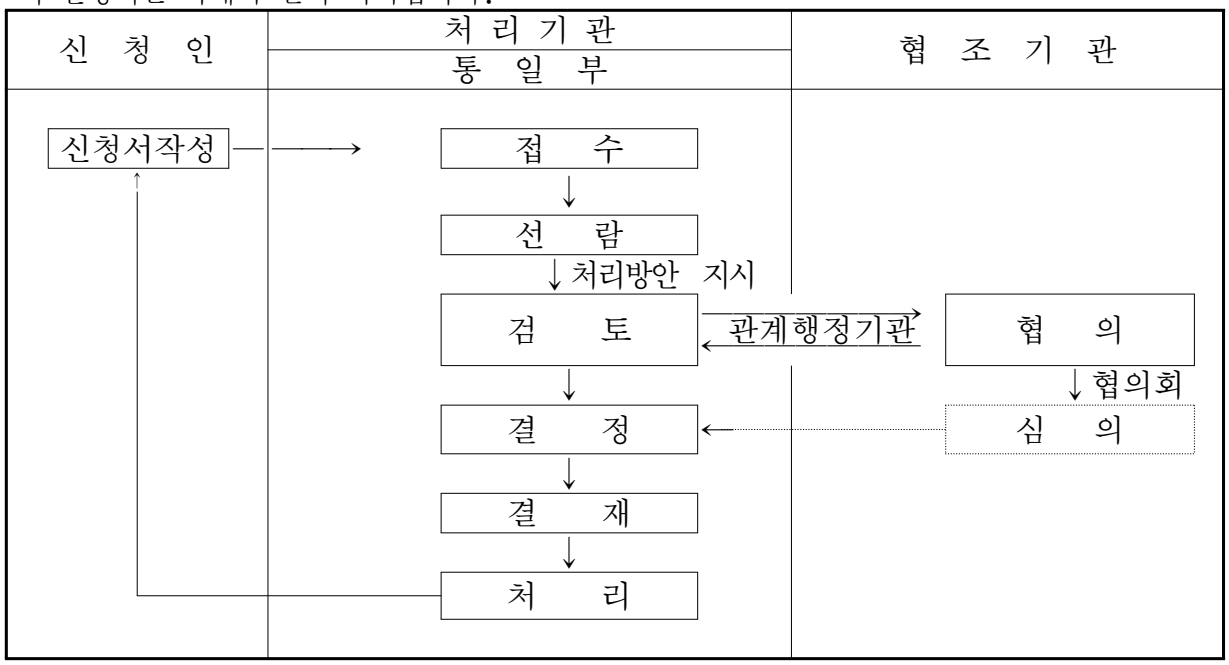

[별지 제4호 서식] (앞 면)

처리기간	5일

자동차운행승인신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차종(등록번호)				
운행목적		□ 화물운송 □ 여객운송 □ 기타( )		
운행기간				
운행노선				
운행구분		□ 정기운행 □ 부정기운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행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운행계획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승무원명부 1부 4. 관계법령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허가·등록증 사본 1부 5. 북한의 운행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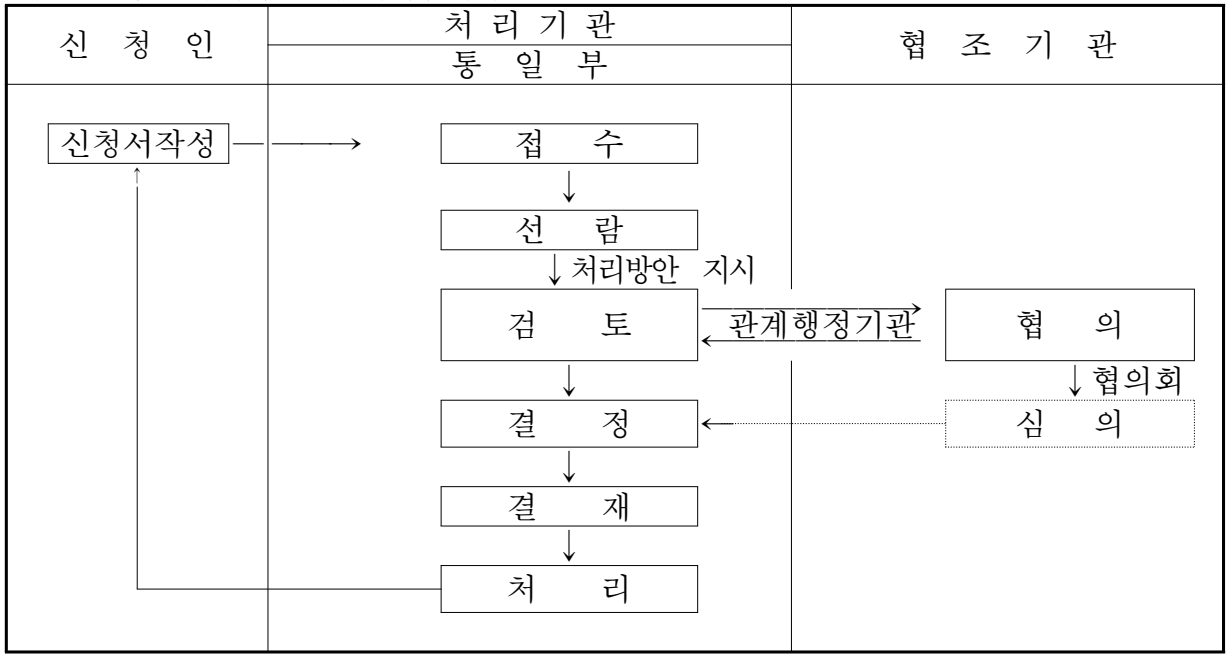

[별지 제5호 서식] (앞 면)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변경전 승인번호			변경전 승인일자	
변경내용 (변경을 요하는 사항만 기입하십시오)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변경사항 해당서류 각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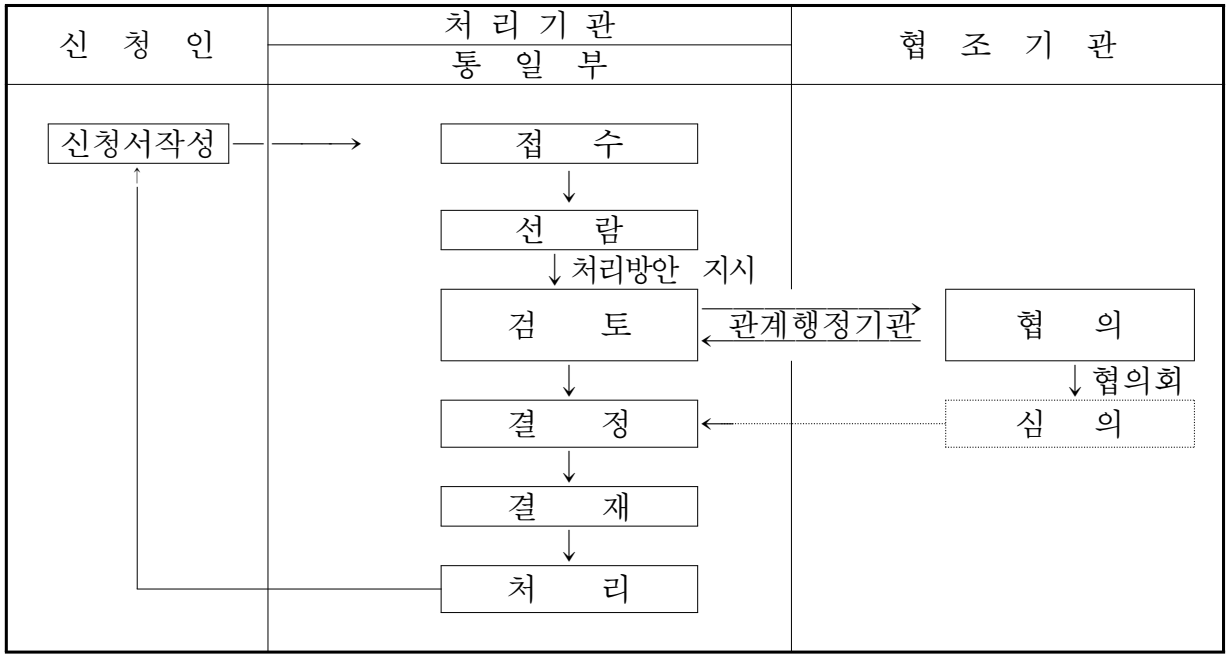

[별지 제6호 서식]

승인번호	선박정기운항승인서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선명(선적, 총톤수)			
운항목적			
운항노선			
운항승인 유효기간			

* 승인조건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월 회 이상 운행하지 않을 경우 정기운항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업을 위해 용선하는 외국적선은 남북간 운항사업에 한하여 운항하여야 합니다.
3. 남북한간 및 제3국간 연계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선박운항후 그 결과를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5. 기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선박의 운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 서식]

승인번호	선박부정기운항승인서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선명(선적, 총톤수)			
운항목적			
운항노선			
운항승인 유효기간			

* 승인조건

1. 승인기간내에 운항하지 않은 경우 본 승인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3조의 서류를 허위기재한 경우 승인을 취소합니다.
4. 선박운항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5. 기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선박의 운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 서식]

승인번호	항공기운항승인서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운항기종				
운항목적				
운항노선				
운항승인 유효기간				
운항구분	정기	월 회	부정기	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항공기의 운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 서식]

승인번호	철도차량운행승인서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차량명칭				
운행목적				
운행구간				
운행승인 유효기간				
운행구분	정기	월 회	부정기	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철도차량의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10호 서식]

승인번호	자동차운행승인서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차종(등록번호)			
운행목적			
운행노선			
운행승인 유효기간			
운행구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자동차의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 서식]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

승인번호	상호(명칭)	수송장비 종류	수송장비 명칭	운행일	운행노선	적재량 (여객수)

210mm×297mm
일반용지 60g/㎡